

# 2020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0일

강 원 도 지 사

## 1. 시험일정

시험구분	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		시험장소 공 고 일	필기시험 일시	합격자 발표일
	접수기간	취소기간			
상반기	3. 16.(월) ~ 3. 18.(수) 09:00 ~ 21:00	3. 16.(월) ~ 3. 27.(금) 09:00 ~ 18:00	4. 8.(수)	4. 18.(토) 10:40 ~ 12:20(100분)	4. 28.(화)
하반기	6. 8.(월) ~ 6. 10.(수) 09:00 ~ 21:00	6. 8.(월) ~ 6. 19.(금) 09:00 ~ 18:00	7. 1.(수)	7. 11.(토) 10:40 ~ 12:20(100분)	7. 21.(화)

※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rovin.gangwon.kr>) 시험 정보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
## 2.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
시험과목	문제수	합격기준
계	80	
1.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	20	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2. 야생동물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	20	
3.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- 1종 수렵면허: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- 2종 수렵면허: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	20	
4.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	20	

※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(4지 택1형)

### 3. 응시자격

-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
-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6조(결격사유)
1. 미성년자
2. 심신상실자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
5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수렴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.

### 4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접수만 가능)

- 접수기간
  - 상반기: 3. 16.(월) ~ 3. 18.(수) 09:00 ~ 21:00
  - 하반기: 6. 8.(월) ~ 6. 10.(수) 09:00 ~ 21:00
- 접수방법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(원서접수 문의: ☎ 1522-0660)

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시·군 환경부서,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응시수수료: 10,000원
  - ※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 등)이 소요되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(취소는 평일에 한함)

시험구분	취소기간		취소방법
	100%반환	50%반환	
상반기	3. 16.(월) ~ 3. 27.(금)	3. 30.(월) ~ 4. 3.(금)	100%반환: 인터넷 직접취소
하반기	6. 8.(월) ~ 6. 19.(금)	6. 22.(월) ~ 6. 26.(금)	50%반환: 신청서류 제출

## ○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

-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규격은 해상도 100dpi 이상 3.5cm×4.5cm 크기의 JPG 형식 파일이며,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.
-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(접수증은 출력 가능)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-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리며,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반환이 불가합니다.

## 5.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시험당일 10:00까지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-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관련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시험도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.
- 총기소지 결격사유(총포화약법 제13조)가 있으면 제1종(총기사용)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  - 수렵면허 필기시험 문의: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(☎ 033-249-2548)
  - 합격자 수렵면허증 발급 등 기타 문의: 강원도청 환경과(☎ 033-249-2582)
- ※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 자료는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(도정마당 → 시험정보 → 시험제도)

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rovin.gangwon.kr>) 시험정보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


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수험면허시험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## 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이름, 주소, 휴대전화, 자택전화,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	본인확인 및 응시수수료 반환처리	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 [별표 1]에 따라 3년까지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비동의

## □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	본인확인 및 응시수수료 반환처리	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 [별표 1]에 따라 3년까지
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비동의

2020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성명

(인 또는 서명)

강 원 도 지 사 귀하